

CONTENTS

1	연구의 필요성: 맞벌이 가구의 증가	1
2	맞벌이 가구의 일반적 특성	2
	가. 부모 특성	2
	나. 가구소득 및 동거형태	3
	다. 맞벌이 이유	4
3	맞벌이 가구의 육아실태	6
	가. 자녀특성	6
	나. 가정내 육아 실태	7
	다. 영유아 자녀의 기관 이용 실태	9
4	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13
	가. 취업 지속 여부	13
	나. 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15
	다. 육아지원 정책 요구	16
5	맞벌이 가구를 위한 육아지원정책방안	17
	가. 육아지원기관 이용시 보육료·교육비 지원기준 및 대상 확대	17
	나. 국공립 보육시설·유치원 우선 입소시 '근로여부' 기준 중시	18
	다. 맞춤형 맞벌이 가구 육아지원정책 수립·추진 필요	19
■	참고문헌	20

① 연구의 필요성: 맞벌이 가구의 증가

●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1년 6월 기준으로 유배우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43.6%)가 홑벌이 가구(42.3%)를 추월한 것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a, 2011)¹⁾.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전체 맞벌이 가구의 35.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8.8%, 30대가 18.6%순으로 나타났다. 30대가 40대, 50대보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낮은 사유로는 ‘육아’인 것으로 나타났다.²⁾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조사보고서』에서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는 ‘육아부담’이 부동의 1순위이다(통계청b, 2011). 이처럼 국가수준의 통계자료는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 본고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³⁾ 육아실태와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들 가구의 육아지원요구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0년 8월 기준으로 양쪽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대도시 거주 가구로 한정하여⁴⁾ 총 800사례의 맞벌이 가구를 표집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주요 분석으로 삼았다.

* 본고는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로 수행한 「가구유형별 육아지원요구와 정책방안 연구: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이윤진, 이정원, 김문정, 황은숙) 연구보고서에서 발췌,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 1) 나머지 14.1%는 가구주 부부 모두가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인 기타가구이다(통계청a, 2011).
- 2) 동일 조사에서 각 연령대별 경력단절 사유를 살펴보면, 30대는 ‘육아’가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신·출산’은 15~20세 연령층(30.7%)에서, ‘자녀교육’은 40대 연령층(7.8%)에서 높게 나타났다(통계청a, 2011).
- 3) 우리나라는 합의된 맞벌이의 개념 정의가 부재하다. 본고에서는 통계청에서 정의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남편과 부인 모두가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가구주 부부”를 맞벌이 개념을 차용하였다.
- 4) 울산광역시는 인구수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어서 표본수를 고려하여 이번 조사에서 제외함.

② 맞벌이 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 부모 특성

- 다음 <표 1>은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이다. 30대의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이 표집되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전문경영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2순위 직업에서 어머니는 ‘판매서비스직’, 아버지는 ‘기술생산 및 기능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게 나와서 성별차이를 보였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어머니, 아버지 모두 정규직이 가장 많았으나 어머니와 아버지 간 약 20%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종사상 지위가 대체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연령	20대	1.5
	30대	66.6
	40대 이상	31.9
학력수준	고졸이하	24.6
	대졸(전문대포함)	69.6
	대학원졸 이상	5.8
직업	전문경영사무직	58.1
	판매 서비스직	16.3
	기술생산 및 기능서비스직	22.4
	단순노무 및 기타	3.3
종사상 지위	정규직	76.1
	비정규계약직	7.6
	단기계약직	1.1
	일용직	0.9

구분	어머니	아버지
고용주	1.3	1.8
자영업/프리랜서	11.1	12.5
무급가족종사자	1.4	-
계	100.0(800)	100.0(800)

나. 가구소득 및 동거형태

- 다음 <표 2>는 맞벌이 가구의 어머니, 아버지 각각의 월평균소득이다. 아버지의 89.6%가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는 반면, 어머니의 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28.2%에 불과하였다. 어머니의 평균 소득수준은 156만 6천 원으로 아버지의 평균 소득 256만 5천원 대비 61% 수준이다. <표 1>과 <표 2>를 통해, 남성의 비해 여성이 종사상 직위와 근로소득 등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맞벌이 가구의 소득

단위: %(명)

구분	무급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계	평균 (만원)
어머니	1.4	70.4	24.1	4.1	100.0(800)	156.6
아버지	-	10.4	58.5	31.1	100.0(800)	256.5

- 이러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가구총소득은 약 70%가 300~500만원 사이에 분포해 있다. 이는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취업모 가구의 평균 소득이 384.5만원으로 집계된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 맞벌이 가구의 가족동거유형을 살펴보면, 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가 84.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부모 등 다른 친인척과 동거하는 '확대가족'이 많았으나 핵가족 형태에 비하면 그 비율은 매우 낮았고, 주말부부 및 주중에 자녀와 함께 동거하지 못하고 떨어져 사는 동거유형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족 동거 유형

단위: %(명)

부부+자녀의 핵가족	(시부모등)다른 친인척과 동거하는 확대가족	주중에 부부가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	주중에 아이와 떨어져 삼	기타	계
84.5	12.4	1.6	1.3	0.3	100.0(800)

다. 맞벌이 이유

- 맞벌이 가구의 맞벌이 이유를 알아보았다. 맞벌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유지가 32.6%로 가장 많았고, 자아실현 22.8%, 교육비·양육비 21.6%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변인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총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비·양육비 마련’이 자녀수가 적은 집단보다 높았고, 자녀가 1명만 있는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자아실현’과 ‘노후대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어머니의 연령별로 맞벌이 이유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생계를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 것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응답했지만, 2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아실현’이 현저히 높고, 이에 반해 40대 이상의 어머니는 ‘교육비·양육비 마련’, ‘노후대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 어머니의 학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생계유지’, ‘교육비·양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맞벌이를 하는 주요 이유인 반면, 대졸이상은 ‘자아실현’을 가장 많이 꼽았다. 맞벌이 이유는 ‘가구소득’ 변인에서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부부합산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생계유지’가 맞벌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지만,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50%가 ‘자아실현’때문에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끝으로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정규직'으로 종사하는 경우 '생계유지'(25.7%)보다 '자아실현'(29.9%) 응답이 높았다. 그 외의 집단에서는 모두 '생계유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일용 및 기타'신분의 취업모 집단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맞벌이를 한다는 응답이 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4〉 맞벌이를 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생계유지	자아실현	교육비·양육비	노후대비	대리양육자(기관)가 있어서	기타	계
전 체	32.6	22.8	21.6	18.1	3.8	1.1	100.0(800)
총자녀수							
1명	28.4	29.1	15.9	20.3	5.3	0.9	100.0(320)
2명	35.7	18.5	25.2	16.8	2.6	1.2	100.0(417)
3-4명	33.3	19.0	27.0	15.9	3.2	1.6	100.0(63)
$\chi^2(df)=25,56(10)**$							
모의 연령							
20대	30.9	30.9	17.6	13.2	7.4	0.0	100.0(68)
30대	33.1	22.7	21.3	18.3	3.6	1.1	100.0(635)
40대 이상	30.9	17.5	26.8	20.6	2.1	2.1	100.0(97)
$\chi^2(df)=10,95(10)***$							
모의 학력							
고졸 이하	42.0	10.1	25.7	17.2	3.8	1.2	100.0(338)
(전문)대졸	25.4	32.0	18.8	18.8	3.9	1.1	100.0(437)
대학원졸이상	32.0	32.0	16.0	20.0	0.0	0.0	100.0(25)
$\chi^2(df)=63,81(10)***$							
부부합산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0.0	8.6	17.1	11.4	2.9	0.0	100.0(70)
300만원대	39.5	14.6	26.3	14.6	4.3	0.7	100.0(281)
400만원대	25.8	26.2	21.1	20.0	4.7	2.2	100.0(275)



구분	생계 유지	자아 실현	교육비·양육비	노후 대비	대리양육자 (기관)가 있어서	기타	계
500만원대	20.2	30.6	17.7	28.2	2.4	0.8	100.0(124)
600만원 이상	24.0	50.0	14.0	12.0	0.0	0.0	100.0(50)
$\chi^2(df)=92.78(20)***$							
중사상신분(모)							
정규직	25.7	29.9	19.6	20.7	2.9	1.3	100.0(455)
비정규직	40.5	10.5	31.0	12.4	4.8	1.0	100.0(210)
고용주및자영	40.4	18.2	16.2	19.2	6.1	0.0	100.0(99)
일용 및 기타	52.8	16.7	8.3	16.7	2.8	2.8	100.0(36)
$\chi^2(df)=66.97(15)***$							

** p < .01, *** p < .001.

③ 맞벌이 가구의 육아실태

가. 자녀특성

- 본 설문조사대상 맞벌이 가구의 평균 총자녀수는 1.68명이며 2명인 경우가 52.1%로 가장 많았다. 2명의 자녀 중 영유아 자녀는 평균 1.15명으로 1명인 경우가 85.6%였고,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만 3세 이상의 유아인 경우가 70.4%로서 가장 어린 자녀는 영아보다는 유아가 많았다. 이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취업모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만을 표집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표 5〉 자녀수와 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비율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총자녀수					
1명	40.0	320			
2명	52.1	417	1	4	1.68
3~4명	7.9	63			
영유아자녀수					
1명	85.6	685			
2~3명	14.4	115	1	3	1.15
최연소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29.6	237			
만 3세 이상	70.4	563	0	7	3.69

나. 가정내 육아 실태

- 맞벌이 가구의 가정 내에서의 육아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부부가 모두 출근한 후에 가정에서 자녀를 누가 주로 돌보는지를 알아본 결과, ‘없음’이 40.1%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조부모 39.8%, 손위형제 9.4% 순이었다. 이는 앞서 〈표 3〉 가족동거유형에서 핵가족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과 연결 지어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이들 맞벌이 가구의 대다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리라 짐작할 수 있다.⁵⁾
- 그러나 총자녀수, 영유아 연령에 따라서 출근 후의 주양육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결측치 6사례를 제외한 분석결과이다(〈표 6〉 참조). 총자녀수가 적을수록 조부모가 맞벌이 부부의 출근 후의 주양육자 역할을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손위 형제가 돌본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주양육자는 조부모인 경우가 63.7%로서, 자녀가 영아일 때는 혈연에 의한

5) 〈표 6〉 미취학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에서 81.3%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대리양육자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만 3세 이상의 유아는 그 비율이 29.3%로 푹 떨어짐을 알 수 있다.

● 이밖에 대졸이상의 어머니의 경우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자녀들의 주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아이의 손위 형제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비중이 높았다. 가정부/아이돌보미와 같은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주양육자인 경우는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사실도 눈에 띈다.

〈표 6〉 맞벌이 가구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조부모	손위 형제	친인척	이웃 친지	가정부/ 아이돌보미	없음	계
전체	39.8	9.4	4.4	4.4	1.9	40.1	100.0(794)
총자녀수							
1명	53.0	0.0	5.1	5.1	1.0	35.9	100.0(315)
2명	32.7	13.7	3.8	4.3	2.4	43.0	100.0(416)
3-4명	20.6	28.6	4.8	1.6	3.2	41.3	100.0(63)
$\chi^2(df)=94,07(10)***$							
영유아 자녀수							
1명	39.6	10.6	4.7	4.7	1.6	38.8	100.0(680)
2-3명	41.2	2.6	2.6	2.6	3.5	47.4	100.0(114)
$\chi^2(df)=12,15(5)*$							
영유아 연령							
만 3세 미만	64.3	1.3	4.7	3.0	3.0	23.8 46.9	100.0(235)
만 3세 이상	29.5	12.9	4.3	5.0	1.4		100.0(559)
$\chi^2(df)=99,38(5)***$							
모의 연령							
20대	60.3	0.0	4.4	0.0	0.0	35.3	100.0(68)
30대	39.7	8.7	4.8	5.1	2.4	39.3	100.0(629)
40대 이상	25.8	20.6	2.1	3.1	0.0	48.5	100.0(97)
na							

구분	조부모	손위 형제	친인척	이웃 친지	가정부/ 아이돌보미	없음	계
모 학력							
고졸 이하	30.6	15.1	3.3	5.3	1.2	44.5	100.0(337)
(전문)대졸	46.8	5.6	4.9	3.9	2.3	36.6	100.0(432)
대학원졸이상	44.0	0.0	12.0	0.0	4.0	40.0	100.0(25)
na							
부부합산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4.5	15.9	7.2	7.2	0.0	55.1	100.0(69)
300만원대	33.8	11.0	4.6	5.0	1.1	44.5	100.0(281)
400만원대	48.7	6.6	2.9	3.3	0.7	37.7	100.0(273)
500만원대	47.1	9.1	5.0	2.5	5.0	31.4	100.0(121)
600만원 이상	42.0	8.0	6.0	8.0	8.0	28.0	100.0(50)
na							

주: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 p < .05, *** p < .001.

다. 영유아 자녀의 기관 이용 실태

- 본 설문조사 대상자에게 영유아 자녀(미취학 자녀)의 기관이용 여부를 알아 보았다. 전체 800사례 중 81.3%가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기관 이용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들 맞벌이 가구의 동거형태가 핵가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표 3〉참조) 육아지원기관의 의존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
- 영유아 자녀수가 1명보다 2~3명인 경우 이용률이 높았다. 영유아 연령도 기관 이용여부와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의 기관이용이 절반이 안 되는 반면, 만 3세 이상의 유아는 96.4%라는 높은 기관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 어머니의 학력이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교차분석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기관 이용률이 높았고, 가구



소득은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기관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 맞벌이 가구 영유아 자녀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이용하고 있다	이용하지 않는다	계	$\chi^2(df)$
전체	81.3	18.8	100.0(800)	
영유아 자녀수				
1명	79.6	20.4	100.0(685)	
2-3명	91.3	8.7	100.0(115)	10.06(1)*
영유아 연령				
만 3세 미만	45.1	54.9	100.0(237)	288.12(1)***
만 3세 이상	96.4	3.6	100.0(563)	
모 학력				
고졸 이하	84.9	15.1	100.0(338)	
(전문)대졸	78.7	21.3	100.0(437)	14.45(2)
대학원 졸 이상	76.0	24.0	100.0(25)	
부부합산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90.0	10.0	100.0(70)	
300만원대	82.9	17.1	100.0(281)	7.29(4)
400만원대	77.1	22.9	100.0(275)	
500만원대	82.3	17.7	100.0(124)	
600만원 이상	80.0	20.0	100.0(50)	

* $p < .05$. *** $p < .001$

다음으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150사례를 대상으로 미이용 이유를 알아본 결과, ‘기관에 보내기에는 아이가 어려서’로 전체 응답의 52.0%를 차지하였고, 이밖에 ‘대리양육자가 있어서’(32.0%), ‘주변에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어서’(8.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답항목의 차이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기관에 보내기에는 아이가 어려서’ 보내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선행 연구(서문희 외, 2005; 이정원·이윤진, 2008)에서 드러난 결과와 일치한다. 자녀가 어릴수록(만 3세 미만) ‘너무 어려서’라고 답한 비

중이 크고, 만 3세 이상 유아에서는 ‘믿고 맡길 만한 기관이 없어서’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다.

〈표 8〉 맞벌이 가구 영유아 자녀의 기관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너무 어려서	대리 양육자가 있어서	믿고 맡길 만한 기관이 없어서	비용 부담	기관에 부적응	계	$\chi^2(df)$
전 체	52.0	32.0	8.0	6.7	1.3	100.0(150)	
영유아 연령							
만 3세미만	53.8	31.5	6.9	6.9	0.8	100.0(130)	4.54(4)
만 3세이상	40.0	35.0	15.0	5.0	5.0	100.0(20)	

● 현재 미취학 자녀를 보내고 있는 650사례를 대상으로 이용 기관의 종류를 알아본 결과, 민간보육시설이 41.1%로 가장 많았고 사립유치원 27.2%, 국공립보육시설 17.8% 순으로 보고되었다.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의 이용율을 합친 68.3%가 민간이 운영하는 하는 기관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26.6%로서 민간기관 이용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⁶⁾ 핵가족 구조에서 맞벌이 가구는 기관의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국공립보다 민간·사립의 의존도가 70%가까이 육박한다는 사실을 통해 맞벌이 가구가 국공립 기관의 입소(원)에서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역별로 이용 기관 종류의 차이가 나타났다. 대구·인천·대전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부산과 대전은 사립유치원 이용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대전의 경우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 민간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뚜렷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영어학원 및 놀이학원 이용은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의 이용률이 두드러지게

6)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는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높았다.

〈표 9〉 미취학 자녀 이용 기관

단위: %(명)

구분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가정 어린이집	유아 학원	계
전 체	41.1	27.2	17.8	8.8	5.4	2.3	100.0(650)
거주지							
서울	32.0	27.8	21.6	14.5	4.6	2.5	100.0(241)
부산	33.7	34.6	21.2	2.9	10.6	1.0	100.0(104)
대구	51.9	21.5	16.5	2.5	1.3	7.6	100.0(79)
인천	55.1	20.5	15.4	7.7	5.1	0.0	100.0(78)
광주	41.9	17.6	20.3	10.8	8.1	1.4	100.0(74)
대전	54.1	37.8	2.7	4.1	2.7	1.4	100.0(7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5.6	14.3	17.5	6.3	6.3	0.0	100.0(63)
300만원대	42.1	26.2	18.5	9.4	5.2	1.3	100.0(233)
400만원대	42.0	27.8	18.4	5.2	7.1	3.3	100.0(212)
500만원대	35.3	30.4	18.6	11.8	3.9	2.0	100.0(102)
600만원 이상	22.5	42.5	10.0	20.0	0.0	7.5	100.0(40)

- 영유아 자녀의 기관이용을 위해 매월 30만원~39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비용은 30만 1천원이었다. 영유아 자녀가 1명일 경우 평균 28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나, 영유아 자녀가 2~3명인 경우는 평균 40만 6천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 이처럼 기관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은 가구 경제에 부담을 유발하므로 어머니의 소득이나 가구 총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 지출 수준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어머니의 소득이나 가구총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일수록 미취학 자녀를 위한 기관 이용에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표 10〉 미취학 자녀 기관 월 이용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10만원 미만	10만원 대	20만원 대	30만원 대	40만원 이상	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0	16.2	22.5	30.2	25.2	100,0(650)	30.1	16.3
영유아 자녀수								
1명	6.6	18.3	22.4	31.4	21.3	100,0(545)	28.1	13.9
2-3명	2.9	4.8	22.9	23.8	45.7	100,0(105)	40.6	22.7
월평균소득(모)								
100만원 미만	16.3	22.5	16.3	26.3	18.8	100,0(80)	24.7	15.2
100~150만원미만	6.5	23.8	26.2	26.2	17.3	100,0(214)	26.5	15.2
150~200만원미만	4.0	12.5	27.3	29.0	27.3	100,0(176)	30.9	14.3
200~250만원미만	3.4	6.8	17.8	44.1	28.0	100,0(118)	34.1	16.0
250만원 이상	1.6	9.7	12.9	25.8	50.0	100,0(62)	39.5	21.2
가구 총소득								
300만원 미만	22.2	23.8	14.3	22.2	17.5	100,0(63)	21.5	13.9
300만원대	6.0	23.2	24.9	26.2	19.7	100,0(233)	27.5	15.3
400만원대	3.8	11.3	28.3	32.5	24.1	100,0(212)	31.0	14.3
500만원대	2.9	7.8	13.7	37.3	38.2	100,0(102)	36.7	19.8
600만원 이상	0.0	10.0	12.5	35.0	42.5	100,0(40)	37.2	16.9

4 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가. 취업 지속 여부

-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하면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인지를 퇴직 의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응답자(어머니)의 77.5%는 퇴직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어머니의 퇴직 의향은 영유아 자녀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연령대가 젊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모의 소득이 높고, 종사상 지위가 안정될수록 퇴직할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표 11〉 향후 자녀양육으로 인한 퇴직 의향

단위: %(명)

구분	그만들 생각없음	자녀취학 후 그만들 생각임	곧 그만들 생각임	계	$\chi^2(df)$
전 체	77.5	15.9	6.6	100.0(800)	
영유아 자녀수					
1명	79.1	14.6	6.3	100.0(685)	7.38(2)*
2-3명	67.8	23.5	8.7	100.0(115)	
모의 연령					
20대	73.5	23.5	2.9	100.0(68)	10.79(4)*
30대	76.4	16.4	7.2	100.0(635)	
40대 이상	87.6	7.2	5.2	100.0(97)	
모의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2.1	19.8	8.1	100.0(86)	11.91(8)
100~150만원미만	72.0	19.6	8.4	100.0(250)	
150~200만원미만	79.4	15.1	5.5	100.0(238)	
200~250만원미만	84.8	10.6	4.6	100.0(151)	
250만원 이상	81.3	12.0	6.7	100.0(75)	
모의 종사상 신분					
정규직	80.7	15.2	4.2	100.0(455)	15.13(6)*
비정규직	71.4	19.5	9.0	100.0(210)	
고용주 및 자영	77.8	11.1	11.1	100.0(99)	
일용 및 기타	72.2	16.7	11.1	100.0(36)	

* $p < .05$

나. 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만족도 정도를 알아보았다(표 12 참조). 먼저, 각 불만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1점’, ‘약간 그렇다-2점’, ‘별로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으로 점수화하여 불만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도록 하였는데, 7가지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평균 3점대의 점수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 ‘맞벌이 부부에 대한 비용 지원이 거의 없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1.77점으로 현저하게 낮게 나와서 비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전체 가구소득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기관 이용시 비용지원의 폭이 큰 구조에서는, 외벌이가구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대리양육자가 없어서 기관이용 의존율이 높은 맞벌이 가구에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자녀양육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란 점에서—특히, 육아휴직제도를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맞벌이 가구—맞벌이 가구가 기관을 이용 시, 홑벌이 가구의 비용지원과는 다른 소득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2〉 이용기관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1)	약간 그렇다 (2)	별로 그렇지 않다(4)	전혀 그렇지 않다(5)	계 (650)	평균 (점)
운영시간이 탄력적이지 않다	2.0	39.5	50.8	7.7	100.0	3.23
맞벌이 가구에 비용지원이 거의 없다	64.5	16.0	16.8	2.8	100.0	1.77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2.9	23.1	61.1	12.9	100.0	3.58
원장이나 교사의 자질이 떨어진다	1.7	14.2	64.2	20.0	100.0	3.87
교재나 놀이기구가 낡았다	2.6	16.6	64.3	16.5	100.0	3.75
기관의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1.8	17.5	66.6	14.0	100.0	3.73
아이와 관련 정보소식이 불충분하다	1.1	19.4	68.6	10.9	100.0	3.69



다. 육아지원 정책 요구

● 다음 <표 13>는 맞벌이 가구가 정부로부터 희망하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가장 원하는 정책 1순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 시 ‘맞벌이 가구를 위한 비용 지원 확대’(65.9%)였다. 이어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30.9%)’, ‘맞벌이 가구 유치원/보육시설 우선 입소(30.0%)’,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27.8%)’ 순이었다. 앞서 <표 12>에서 기관이용시 비용부분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모의 소득과 종사상 지위에 따라 2순위 희망정책에서 차이를 보였다. 모의 소득이 낮거나 종사상 지위가 불안한 일용직 종사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우선 입소를 비용지원확대 다음으로 꼽았다면, 모의 소득이 높거나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인 정규직 집단에서는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우선 입소보다 더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13> 맞벌이 가구의 희망 육아지원정책

단위: %(명)

구분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직장보육 시설 확충	국공립 유치원/ 보육시설 우선 입소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시설 확대	가정보육 제도 확대	계
전체	65.9	30.9	30.0	27.8	27.3	17.9	100.0(800)
모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7.9	14.0	31.4	33.7	23.3	18.6	100.0(86)
100~150만원미만	67.2	31.6	29.2	30.0	26.8	14.8	100.0(250)
150~200만원미만	64.3	31.1	29.0	26.1	29.8	19.7	100.0(238)
200~250만원미만	62.9	33.8	28.5	25.8	30.5	18.5	100.0(151)
250만원 이상	58.7	41.3	37.3	22.7	18.7	20.0	100.0(75)
모 종사상신분							
정규직	64.4	34.7	27.5	29.5	26.4	17.4	100.0(455)
비정규직	66.2	32.9	29.5	27.1	30.0	13.8	100.0(210)
고용주 및 자영	68.7	14.1	37.4	24.2	28.3	27.3	100.0(99)
일용 및 기타	75.0	16.7	44.4	19.4	19.4	22.2	100.0(36)

주: 복수응답 결과임.

② 맞벌이 가구를 위한 육아지원정책방안

- 지금까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 800사례의 육아실태와 지원요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면서 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가. 육아지원기관 이용시 보육료·교육비 지원기준 및 대상 확대

- 본 조사에서 맞벌이 가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의존율이 매우 높았다. 맞벌이 가구의 약 85%가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이므로 출근 후 자녀를 돌봐 줄 대리양육자가 없는 경우가 40%이상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0대는 육아로 인해 직장의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이다. 본 조사에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로 한정하다 보니 30대가 가장 많이 표집되었는데, 이들의 77.5%가 향후 퇴직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맞벌이 가구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취업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맞벌이 가구를 위한 육아지원제도가 잘 마련되어 운영되기만 한다면,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은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본 조사에서 맞벌이 가구의 기관 이용시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비용지원이 거의 없다'였다. 이는 지금의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가구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적인 비용지원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는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가구보다 절대적 소득은 높을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소득세를 각각 납부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에 각각 가입하면서, 국가경제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맞벌이 가구의 사회적 기여도 및 육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여성 경제활동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홑벌이 가구와는 차별화된 비용지원 기준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2010년 3월부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부부의 소득 중 낮은 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⁷⁾, 비용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는 부부의 월급여 뿐 아니라 재산이 합산되어 계산되며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75%만을 인정하는 방식은 부부의 월소득합산이 같은 가구내에서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소득의 인정 비율은 두 부부의 소득 합산의 일정비율로 계산하거나 소득이 높은 쪽의 일정 비율을 감하여 합산하는 방식 등 지원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나. 국공립 보육시설·유치원 우선 입소시 '근로여부' 기준 중시

- 본 연구결과에서 맞벌이 가구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68.3%에 달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서는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등 공공성을 띤 어린이집에서는 입소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⁸⁾, 맞벌이 가구의 자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물론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도 모두 보육의 필요성이 높은 대상들이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참조.

8)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0.9, 2010.1.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같은 경우 특히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도 혜택이 큰 계층일 수 있으므로 보육 시설 입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보육료 지원의 기준과는 달리 좀더 ‘대리양육의 필요성’의 조건을 고려해 입소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입소 우선순위를 가지는 맞벌이 가구에 있어서도 현재 대리양육의 욕구가 큰 실질적인 맞벌이 가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만을 제출하도록 허술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나 가족사업장에 명의만 올라있는 경우 등 대리양육의 욕구가 크지 않으면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집단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공급이 한정되고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입소 우선순위의 변경 및 입소자 선정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맞춤형 맞벌이 가구 육아지원정책 수립 · 추진 필요

- 본 연구에서 동일한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모의 소득 또는 부부합산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종사사 지위에 따라서 희망하는 지원정책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맞벌이 가구의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 어머니가 소득이 낮거나 종사상 지위가 불안한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우선 입소를 비용지원확대 다음으로 꼽았다면, 모의 소득이 높거나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인 정규직에 종사는 어머니 집단에서는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우선 입소보다 더 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시 말해서 가구소득이 낮은 맞벌이 가구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은 기관지원책을, 고소득의 맞벌이 가구를 위해서는 직장보육 시설 설치를 위한 기업지원책 등의 두 트랙이 동시에 제대로 작동될 때, 맞벌이 가구의 육아 사각지대는 최소화될 것이며 비로소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30대 여성의 경력단절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서문희·김은설·안재진·최진·최혜선·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개발센터.

이정원·이윤진(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실태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통계청(2010). 201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a(2011). 2011년 맞벌이 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결과.

통계청b(2011). 2010년 사회조사보고서.